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고용노동부 http://www.moel.go.kr

2019년 6월 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4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6. 4(화) 11:00	담당부서	산업부 인증산업진흥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
담당과장	박종섭 과장(043-870-5500) 고광훈 과장(044-202-7722)	담 당 자	김효중 사무관(043-870-5503) 신백우 사무관(044-202-7734)

융합기술 방진마스크 시장출시 애로 해소

-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 등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융합제품인 '필터교체형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' 등 3개 제품에 대해 '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'(이하 '적합성인증')을 부여했다고 밝혔다.

○ 그동안 이들 제품에 요구되는 보호구 안전인증(KCs)을 받지 못해 시장출시 못했는데 안전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적합성인증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되었다.

□ 이번 융합 신제품들은 방진마스크를 연속 사용하도록 필터 교체가 가능토록 하였으며, 전동 환풍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켰으나, '부품이 교환될 수 없는 것'이라는 기존 일체형 방진마스크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다.

○ 이에 양 부처는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의 융합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, 시험·검사 결과 제품 성능 및 안전성이 입증되어 적합성인증을 부여하였다.

□ 적합성인증은 4차 산업혁명시대, 융합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인증기준이 맞지 않거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하여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,

○ 융합신제품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(Fast-Track)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.

○ 적합성인증제도 창구 역할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으며,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 등은 소관부처가 함께 담당한다.

□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융합신제품 인증애로를 168건을 발굴하였고, 이 중 46개의 융합신제품에 대해 적합성인증으로 진행하여 17개의 인증을 부여하였는데, 최근 융합신제품의 증가로 연평균 인증신청율이 37%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 융합신제품의 빠른 시장출시를 돕기 위하여 이번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에 대한 적합성인증과 같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고용노동부 간 유기적인 협력사례를 범부처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,

○ 융합신제품이 인증이 필요할 경우, 적합성인증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증토양을 만듦으로써 신산업분야 규제혁파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

【붙 임】 1.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개요
2.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3개 품목 정보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김효중 사무관(☎ 043-870-55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개요

◈ **적합성 인증 제도** : 개발이 완료된 **융합신제품이 요구하는 인증**을 **6개월 이내(Fast-track)**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⇒ **개발이 완료**된 융합신제품의 **인증애로 해소**로 **적시 시장진출** 지원

□ 제도소개

○ (개요) 융합신제품에 대한 **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**하여, **Fast-Track(6개월 이내)**으로 적합성인증을 부여

○ (특징) ❶모든 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**全부처 제도,** ❷전문가협의체가 **신속히(90일 이내) 인증기준 마련,** ❸목표했던 **기존 인증과 동일 효력**

□ 운영절차

○ 적합성 인증 대상임이 확인되면 대상여부 통보 후 인증기준 마련 절차 진행 → 새로 마련한 인증기준에 따라 시험·검사 후 적합성인증 부여

○ 새롭게 마련한 인증기준은 기존의 기준을 제·개정하지 않고 별도 고시 → 기존 인증제도의 제·개정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히 인증기준 마련

주체	소관부처				시험기관	소관부처	
기한	D-day	~D+2주	~D+30일	~D+90일	60일 이내	~D+6개월	10일 이내
내용	신청접수	적합성 인증 대상여부 통보	협의체* 구성	**인증 기준 마련**	시험·검사	인증·통보	고시

* 인증 소관부처 공무원 및 시험·인증 전문가로 구성하여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

□ 인증혜택

○ (인증효력)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에 의거, 적합성인증 획득 시 기존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 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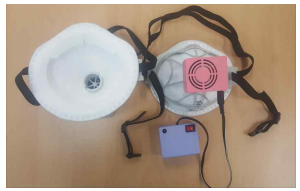
○ (공공조달) 중소기업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제도* 대상품목(10%), 우수조달품목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(최대3점) 부여**

*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제10호
**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, 별지 제2호의2 서식(제8조)

붙임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3개 품목 정보

□ 산업용 흡배기 방진마스크

개요	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의 커버체를 분리 가능하도록 설계하여, 여과재만 교체하여 연속 사용할 수 있고 팬이 부착된(탈착가능) 방진마스크(배터리 분리형)
애로내용	보호구 안전인증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46호)에 명시되어 있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의 '형태 및 구조분류' 규정에 맞지 않아 안전인증(1급) 취득 불가
인증결과	적합성인증 신청('18.10.26.) 후, 적합성인증 부여('19.6.5.)



□ 필터교체형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 #1

개요	인서트(Insert) 사출 방식으로 제작한 안면 보호 가드와 교체가 가능한 여과재를, 신기술(NET)인증을 받은 '벨크로 테이프(Velcro Tape (HooK))'를 이용하여 융합한 방진마스크
애로내용	보호구 안전인증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46호)에 명시되어 있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의 '형태 및 구조분류' 규정에 맞지 않아 안전인증(1급) 취득 불가
인증결과	적합성인증 신청('18.11.1.) 후, , 적합성인증 부여('19.6.5.)



□ 필터교체형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 #2

개요	인서트(Insert) 사출 방식으로 제작한 안면 보호 가드와 교체가 가능한 여과재를, 신기술(NET)인증을 받은 '벨크로 테이프(Velcro Tape (HooK))'를 이용하여 융합한 방진마스크
애로내용	보호구 안전인증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46호)에 명시되어 있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의 '형태 및 구조분류' 규정에 맞지 않아 안전인증(1급) 취득 불가
인증결과	적합성인증 신청('18.11.1.) 후, 적합성인증 부여('19.6.5.)

